#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12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 강경숙·조 국·차규근

이해민 · 김선민 · 김준형

신장식 · 김재원 · 정춘생

박은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는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함.

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 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전액을"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	
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u>중 1,0</u>	<u>전 액을</u>
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	·.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u>&lt;삭 제&gt;</u>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	
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	제2조(유효기간)
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u>2024</u>	<u>2027</u>
<u>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u>년</u>
다.	